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2023년 3월 23일	
2. 장소		본점	
3. 의안 주요내용		1) 제24기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3)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5)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6)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8) 정관 개정의 건	
4.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23년 3월 3일	
- 사외이사	참석(명)	3명	
참석여부	불참(명)	0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이재현	'63.03.28.	FY2023 정기주총일	재선임	'20.03. 하나자산신탁 사내이사(상근감사위원) '19.05. 알파자산운용 고문 '18.01. 금융감독원 충북지원장	하나자산신탁 사내이사 (상근감사위원)	대학교(학사)	한국

【사외이사 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이상영	'62.09.12.	FY2023 정기주총일	재선임	'19.03. 하나자산신탁 사외이사(現) '10.03.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교수(現)	명지대학교 교수 하나자산신탁 사외이사	대학원(박사)	한국
조광희	'69.02.14.	FY2023 정기주총일	재선임	'20.03. 하나자산신탁 사외이사(現) '17.07.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09.03. 동국대학교 경영대학교수(現)	동국대학교 교수 하나자산신탁 사외이사	대학원(박사)	한국
김용직	'55.11.18	FY2023 정기주총일	재선임	'21.03. 하나자산신탁 사외이사(現) '01.08.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現)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하나자산신탁 사외이사	대학교(학사)	한국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조광희	'69.02.14.	FY2023 정기주총일	재선임	'20.03. 하나자산신탁 사외이사(現) '17.07.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09.03. 동국대학교 경영대학교수(現)	동국대학교 교수 하나자산신탁 사외이사	대학원(박사)	한국
이상영	'62.09.12.	FY2023 정기주총일	재선임	'19.03. 하나자산신탁 사외이사(現) '10.03.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교수(現)	명지대학교 교수 하나자산신탁 사외이사	대학원(박사)	한국
이재현	'63.03.28.	FY2023 정기주총일	재선임	'20.03. 하나자산신탁 사내이사(상근감사위원) '19.05. 알파자산운용 고문 '18.01. 금융감독원 충북지원장	하나자산신탁 사내이사 (상근감사위원)	대학교(학사)	한국

【감사선임 세부내역】 : 해당사항없음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1.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에 추가 -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업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류 창고업의 업무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의 설치, 이용, 회원모집, 관리 운영 및 위탁관리업 -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이용, 회원모집, 관리 운영 및 위탁관리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등과 관련된 업무 5. '신탁업에 부수하는 다음의 업무'에 추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 관리신탁에 부수하는 대리사무 업무 - 개발사업 관련 대출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11.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사업목적 추가를 통해 신탁사업 및 리츠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자체 등 행정관청에 등록·신고로 요하는 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사업영역 다각화
2. 사업목적 삭제	해당사항 없음		
3. 사업목적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1.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 가.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나. 건축물 유지·관리업 다.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라.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1.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 가.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나.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관리업 다.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라.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	

	일체의 업무 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업무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류창고업의 업무 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의 설치, 이용, 회원모집, 관리 운영 및 위탁관리업 사.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이용, 회원모집, 관리 운영 및 위탁관리업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 임대관리업 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 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등과 관련된 업무 카.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2.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 임차권의 신탁	2.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및 그 밖의 부동산관련 권리의 신탁	
3. 동산의 신탁	3. 동산의 신탁	
3의1. 무체재산권의 신탁	3의2. 무체재산권의 신탁	
4. 부동산의 신탁	4. 부동산의 신탁	
5. 관련법령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다음의 업무	5. 신탁업에 부수하는 다음의 업무	
가. 채무의 보증	가. 채무의 보증	
나.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나.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다.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다.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라.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사무	라.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사무	
마.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에 관한 대리사무	마.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에 관한 대리사무	
바. 채권의 추심에 관한 대리사무	바. 채권의 추심에 관한 대리사무	
사. 채무의 이행에 관한 대리사무	사. 채무의 이행에 관한 대리사무	
아. 보험에 관한 대리사무	아. 보험에 관한 대리사무	
	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관리신탁에 부수하는 대리사무 업무	
	차. 개발사업 관련 대출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6.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지도·자문(부동산 컨설팅) 및 상담	6.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지도·자문(부동산컨설팅) 및 상담	
7. 부동산 정보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와 발간 및 판매	7. 부동산 정보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와 발간 및 판매	
8. 부가통신사업 및 부동산거래 정보사업	8. 부가통신사업 및 부동산거래 정보사업	
9.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9.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2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2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11.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12. 금전 및 금전채권의 신탁	12. 금전 및 금전채권의 신탁	
13.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법령이 허용하거나 감독기관에서 승인하는 업무	13.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법령이 허용하거나 감독기관에서 승인하는 업무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집중투표제 도입.배제 세부내역】 : 해당사항없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집중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배제		